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아름 소유물건(2024타경56426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애순

감정평가서번호: 2410-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일헌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유 별 희

(인)

감정평가액	일억일천팔백만원정 (₩118,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애순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2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아름 (2024타경564260)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4. 10. 23	2024. 10. 23 ~ 2024. 10. 23	2024. 10. 2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개 호수 이	아파트 하	1개 호수 여	- 백	118,000,000
	합 계					₩11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뉴서울아파트 106동 2층 202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경매22계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건물명, 동호수	만수뉴서울아파트 제106동 제2층 2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사용승인일		1992-08-20		
구분	전유면적 (㎡)	공유면적 (㎡)	계약면적 (㎡)	전용율 (%)	대지권면적 (㎡)	용도		
기호	층/호수					공부	현황	
1	제2층 제202호	34.65	17.3025	51.9525	66.70	16.12	아파트	아파트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년 10월 23일로 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확인)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 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 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나.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 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교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가. 토지, 건물 가격배분

본 건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감정평가가 곤란하나, 귀 법원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나. 임대관계

임대관계 이상임.

다. 기타사항

본 건은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 관찰 등에 의하여 인근 유사 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출하였음.

2.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단가 (원/㎡)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12층 000호	34.65	3,463,203	120,000,000	2024-01-24	1992-08-20
[B]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5층 000호	34.65	3,463,203	120,000,000	2024-06-12	1992-08-20
[C]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10층 000호	34.65	3,463,203	120,000,000	2024-07-05	1992-08-20

나.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 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으며 거래가액의 신뢰성이 높은 거래사례[B]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거래사례[B]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가. 매매가격지수[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파트]

[출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4.05	2024.09	변동률	비 고
90.4	91.8	1.01549	91.8/90.4

나. 시점수정치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며, 본건의 경우 아파트로서 대상 부동산의 특성 및 가격추이가 더 잘 반영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1.01549).

5.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구 분	조 건	항 목
외부요인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도심과의 거리, 교통시설의 상태, 상가배치 등
	환경조건	기상조건, 자연환경, 사회환경, 획지의 상태 등
	행정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등
건물요인	시공상태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정성 등
	설계, 설비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각종 설비의 유무, 종류 등
	노후도	준공시점, 실제경과년수 및 잔존내용년수
	공용시설	주차시설규모, 집회실, 현관시설, 놀이시설, 노인정 등
	규모 및 구성비	건물의 층수, 총세대수, 각 평형별 구성비 등
	건물의 용도	주상복합용건물, 주거단일건물, 현재 이용상태 등
	관리체계	관리의 체계 및 관리 현황
개별요인	층별 효용	일조, 채광, 조망, 접근성 등
	위치별 효용	일조, 채광, 조망, 접근성 등
	향별 효용	일조, 채광의 정도 등
	공용부분의 전용 사용권 유무	주차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	대지권의 종류 및 크기 등
	관리상태	배관, 내부 마감재 수선유지상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 분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호	층/호수				
1	제2층 제202호	1.00	1.00	0.97	0.97
의 견					
외부요인		본 건은 거래사례[B] 대비, 동일 단지 아파트로서 외부요인 대등함.			
건물요인		본 건은 거래사례[B] 대비, 동일 단지 아파트로서 건물요인은 대등함.			
개별요인		본 건은 거래사례[B] 대비, 층별 효용에 따른 개별요인 다소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비교사례 거래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단가 (원/㎡)	대상 전유면적 (㎡)	산출가액(원)
기호	층/호수							
1	제2층 제202호	3,463,203	1.00	1.01549	0.97	3,411,343	34.65	118,203,03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참고가격 자료

1. 매매 시세

기준일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비고
2024. 10. 18.	9,500	1억750	1억1,250	KB부동산
2024. 10. 16.	9,500	1억375	1억1,250	부동산뱅크
2024. 10. 14.	9,500	-	1억2,000	한국부동산원

2. 방매 수준

구 분	방매 수준
본 건 동 유형 아파트	방매 가격은 104,000,000원 ~ 130,000,000원 내외임.

2. 인근 감정평가전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기준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사용승인
1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2층 ○○○호	34.65	3,290,043	114,000,000	경매	2024-07-30
								1992-08-20
2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4층 ○○○호	34.65	3,232,323	112,000,000	경매	2024-01-24
								1992-08-20
3	만수동 1044	만수동뉴서울 000동	10층 ○○○호	34.65	2,886,003	100,000,000	경매	2024-01-17
								1992-08-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전유면적 (㎡)	전유면적 기준결정단가 (원/㎡)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층/호수				
1	제2층 제202호	34.65	3,411,343	118,203,035	118,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상기 참고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만수뉴서 올아파트 106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1층 2층 ~ 15층 각각 지하1층	811.5 807.9 671.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202호 철근콘크리트조	34.65	34.65	118,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평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토지의 표시	표시	22,644.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대					
	2. 동 소	1044-1	도로		1,134.3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3,778.4분의 16.12	16.12		
			2.		23,778.4분의 16.12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47,200,000 70,800,000		
	합 계					₩118,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담방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새시 마감.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1992.7.9)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 복도식,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뉴서울만수(6개동 1,234세대(48.29㎡형), 주차 322대, 용적률 25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아파트 단지는 중로 등 3면 각지에 접하며,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 1, 2 모두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수3),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중(특)2-25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토지 기호 1만 :

대로2류(폭 30m~35m)(2014-12-31)(인고2015-115호(15.5.18.) 변경고시)(접합).

(9) 공부와의 차이

해당 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만수뉴서울아파트 106동 2층 202호
-----	--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만수뉴서울아파트 106동 2층 2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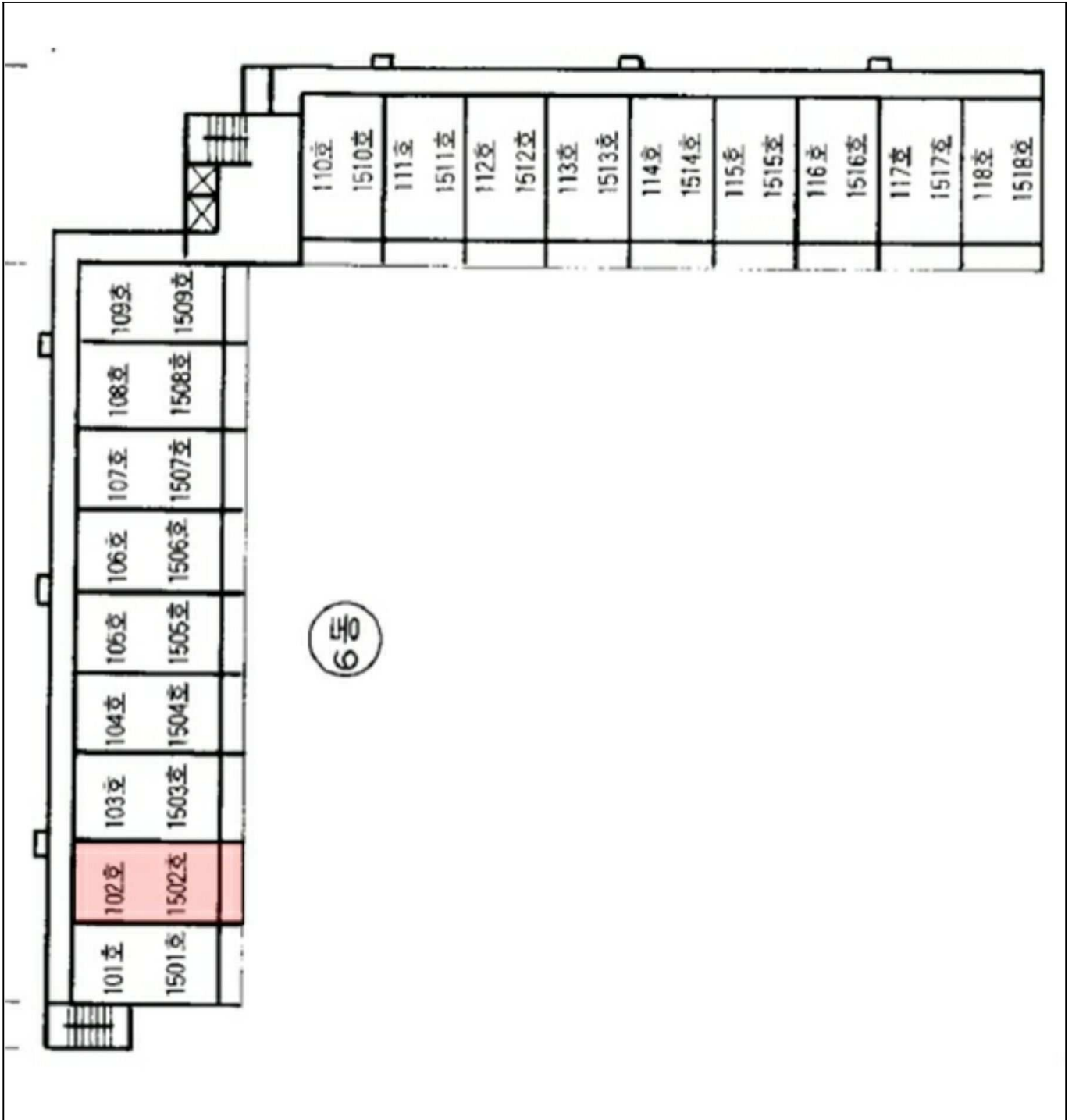


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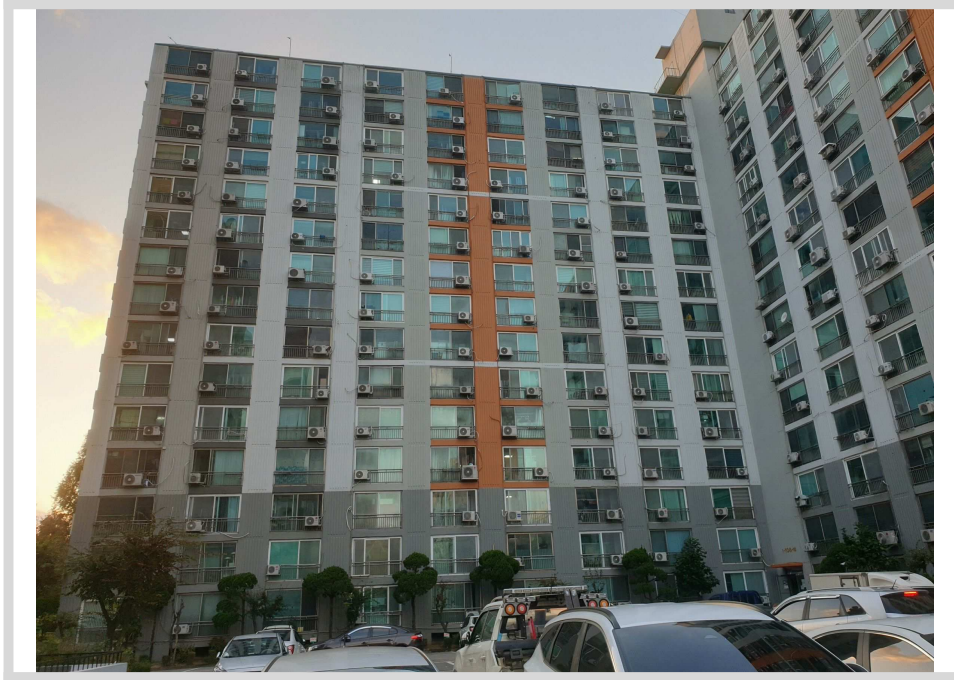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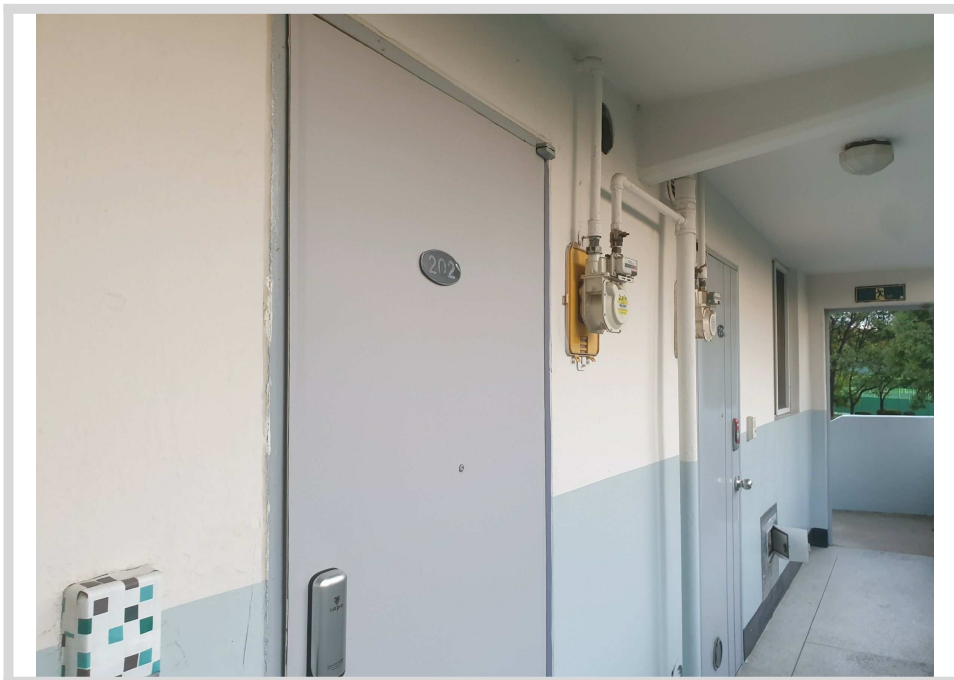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4 만수뉴서울아파트 106동 2층 202호



사 진 용 지



건물 전경



현관